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1월 2일(수) 조간 (1.1.12시 이후 보도)	
배 포 일	2018.12.31 / (총 2매)	담당부서	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
과 장	성 창 현	전 화	044-202-3410
담당자	서 민 수		044-202-3828

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!

- '2018년 11월 3일 ~ 11월 중순'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-
- 기존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,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소득·재산 하위 90%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'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,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「아동수당법」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,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.

○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.

*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(4월 1일)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
(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)

□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·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(탈락)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.

○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반면,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.
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(APP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* '19.1.31 기준 만 6세 미만인 '13.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

□ '19년 1~3월에 신청하면,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~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(4월 25일)된다.

* 단, '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

○ 또한, '18년 11~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.

□ 법 공포일(1월 중순 예상) 이전에는 소득·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, 만약 소득·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

○ 다만 “'18.11.3부터 11월 중순(법 공포일 60일 전)까지” 출생한 아동은,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.